

## ■ 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(분양권 전매계약서 포함)는 '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'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 체결일 인지세를 직접 납부(전자수입인지)하여야 합니다.

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분실되지 않도록 전자수입인지와 분양계약서(분양권 전매계약서 포함)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부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■ 인지세 납부 기한 및 방법 (※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, 제8조)

-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납부기한·방법 :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## ■ 인지세 납부 세액

기재금액	납부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0,000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0,00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0,000원
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0,000원
10억원 초과	350,000원

## ■ 가산세 : 기간별 최대 300% 부과 (※관련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4 제9항, '21.1.1부터 적용)

기간	납부기간이 지난후 3개월 이내	3개월 초과 6개월 이내	6개월 초과
가산세	무(과소) 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 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 납부 세액의 300%

## 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, 우체국, 은행

구분	온라인	오프라인
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.e-revenuestamp.or.kr	우체국, 은행
구입방법	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② 종이문서용 "전자수입인지" 클릭 ③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④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⑤ 결제(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) ⑥ 출력 ⑦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	① 인근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- 용도 : 인지세 납부 - 금액 : 계약서 기재금액에 따른 해당세액 입력 - 매수 : 1매 - 성명/주민등록번호/연락처 기재 ③ 결제(현금납부만 가능) ④ 전자수입인지 발급 ⑤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